

부속서 I
페루의 유보목록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페루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1993) 제 71 조

법령 제757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1. 11. 13.) *민간투자 성장을 위한 기본법(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제13조

유보내용 투자

외국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또는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외국인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된 기업은 페루의 국경선에서 50 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나 물(광산, 산림, 또는 에너지원을 포함한다)을 어떠한 명의로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예외는 공적 필요성이 명시적으로 선언된 경우, 법에 따라 각료 이사회가 승인한 최고 법령에 의해 허락될 수 있다.

위에 언급된 지역 내에서의 취득이나 소유의 각 경우에, 투자자는 현행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해당 요청을 제출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허가는 광업 분야에서 주어지고 있다.

2. 분 야 어업과 어업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12-2001-PE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1. 3. 14.) 수산법 규정(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 및 제 70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외국국적 어선의 선주는 무조건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공동책임과 자동실행이 수반된 보증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 보증서는 조업허가 만료 후 30 일 이내만 유효하다. 그 보증서는 “금융보험연금감독원”에 의해 인정된 금융, 은행, 또는 보험 기관에 의해서 생산부에 이익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발급된다. 그 보증서는 조업권을 얻기 위해 지불되는 금액의 25 퍼센트와 동일한 금액으로 발급된다.

각료 결의에 의해 의무가 면제되는 고도회유성어업에 활동하는 선주를 제외하고, 페루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활동하고 크지 않은 규모(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의 외국국적 어선을 소유한 선주는 그 선박에 위성추적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수산업 허가권을 보유한 외국국적 어선은 페루 해양연구소(Instituto del Mar del Perú - IMARPE)로 부터 임명된 과학 기술 참관인이 승선해야 한다. 선주는 그 대표자에게 선박 내에 숙소와 일급을 제공해야 하며, 그 일급은

페루 해양연구소에 의해 관리되는 특별 계좌에 공탁되어야 한다.

페루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국적 어선의 선주는 적용되는 국내법령에 따라 최소 30퍼센트의 페루 선원을 고용해야 한다.

3. 분 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278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4. 7. 16.) 라디오와
텔레비전법(*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4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 국민 또는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페루에 주소지가 있는 법인만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인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외국 국민은 직접 또는 단독소유기업을 통해 승인 또는 면허를 보유할 수 없다.

4. 분야 시청각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제28278 호 (관보“엘 페루아노” 2004.7.16.) *라디오와 텔레비전법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8 차 보완 최종 규정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상과 텔레비전 방송사에 의한 전체 주간 프로그램의 평균적으로 최소 30퍼센트는 페루 내에서 제작되고 5:00에서 24:00의 시간대에 방영되어야 한다.

5. 분 야 라디오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최혜국대우(제9.4조,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최고 법령 제 005-2005-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5. 2. 15.) 라디오와 텔레비전법 규칙(*Reglamento de la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0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국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법인의 주주, 동업자, 또는 제휴자일 경우, 그 법인은 각료 이사회가 승인한 공적 필요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국민의 출신국과 국경을 접하는 지역에서 방송 허가를 보유할 수 없다.

이 제한은 둘 이상의 현행 허가를 가지고 있는 외국 자본이 포함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 허가가 동일 주파수대인 한, 적용되지 않는다.

6. 분 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령 제 689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1. 11. 5.)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법 제 26196 호에 의해 수정된) 및 제 6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의 모든 고용주들은 그들의 업종이나 국적과는 별개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페루 국민에게 특혜대우를 제공한다.

서비스공급자이며 서비스공급 기업에 의해 고용된 외국의 자연인은 3 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정된 기간의 서면 고용 계약에 따라 페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계약은 이후에 동일기간 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공급 기업은 같은 직업에 페루 인력을 훈련시킨다는 약속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외국 자연인은 기업의 총 고용인원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지할 수 없고, 그들의 급여는 임금 및 급여에 대한 지불총액의 30 퍼센트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비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국민이 페루 국민의 배우자, 부모,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 나. 외국 국적과 등록에 따라 국제 육상, 항공, 수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인력일 경우
- 다. 특정 사건을 규율하는 법에 따라, 다국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은행이나 기업에서 외국인이 일하는 경우
- 라. 계약 기간 동안 적어도 5 개 의 “과세단위” (“UITs”)¹⁾ 를 페루 내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투자의 외국투자자인 경우
- 마. 페루 영역 내 예술가, 운동선수 또는 대중 공연에 종사하는 그 밖의 서비스공급자인 경우 (1 년에 최장 3 개월까지)
- 바. 외국 국민이 이민비자가 있는 경우
- 사. 출생국이 페루와 노동 호혜협정이나 이중국적협정이 있는 외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 아. 외국 인력이 페루 정부에 의해 체결된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페루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국 고용인의 숫자 및 회사의 급여 지불 비중과 관련된 비율에 관하여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가. 특수 전문직 또는 기술 인력
- 나. 새로운 사업 활동이나 재전환한 사업 활동을 위한 임원이나 관리자
- 다. 중등과정 후의 교육, 또는 외국 사립초등학교·중·고등학교, 또는 지역 사립학교에서 언어교육, 또는 전문화된 언어교육원에 고용된 교사
- 라. 공공 단체, 협회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인력
- 마. 전문성, 자격 또는 경력 기준에 따라서 최고 법령에 정해진 그 밖의 경우

1) “과세단위(Unidad Impositiva Tributaria, UIT)”는 과세표준, 공제, 부과 한도, 그리고 입법자가 편리하다고 간주하는 그 밖의 세금의 다른 측면을 불변가격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세 원칙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총액이다.

7. 분 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법률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령 제 1049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8. 6. 26.)
공증인법(*Ley del Notariado*) 제 10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페루 국민만이 공증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8.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건축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법 제 14085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62. 6. 30.) 페루 건축사 협회 설립법(<i>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l Perú</i>)</p> <p>법 제 16053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66. 2. 14.) 페루 엔지니어 및 건축사 협회가 국가 엔지니어와 건축 전문가를 감독하도록 승인하는 전문가 업무법(<i>Ley del Ejercicio Profesional, Autoriza a los Colegios de Arquitectos e Ingenieros del Perú para supervisar a los profesionales de Ingeniería y Arquitectura de la República</i>) 제 1 조</p> <p>회기 제 04-2009호(2009. 12. 15.)에 승인된 국가 건축사 협의회 협정(<i>Acuerdo del Consejo Nacional de Arquitectos</i>)</p>
유보내용	<p><u>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페루에서 건축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인은 “건축사 협회(Colegio de Arquitectos)”에 가입해야 한다. 페루인과 외국인간에 등록비용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차이의 비율은 5 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다 높은 투명성을 위해, 현재 등록비용은 다음과 같다.

가. 페루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페루 국민은 775 솔

- 나.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페루 국민은 1,240 술
- 다. 페루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1,240 술, 또는
- 라.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외국인은 3,100 술

또한 페루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건축가는 일시적 등록을 하기 위해 페루에 거주하는 페루인 건축가와 제휴 계약을 해야 한다.

9. 분야 전문직서비스

하위분야 회계감사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리마 공인회계사 협회 규칙(*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 제 145 및 제 146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회계감사 기업은 “리마 공인회계사 협회(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에 의해 정당하게 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허가된 공인회계사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페루의 다른 회계감사 기업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0. 분야 경비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05-94-IN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4. 5. 12.) *사설 경비 서비스 규정(Reglamento de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제 81 조 및 제 83 조

유보내용 투자과 국경 간 서비스무역

경비 요원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획득한 페루인이어야 한다.

경비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고위 관리자는 출생에 의해 국적을 획득한 페루인이어야 하며 페루에 거주해야 한다.

11.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국가 예술 시청각제작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3 조 및 2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모든 국내 예술 시청각 제작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모든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페루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불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에 관여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비율은 페루 밖에서 고용된 외국 출연진에 의해 제공되고, 그들의 공연이 작품 또는 엔터테인먼트의 전체를 구성하며, 적절하게 문화 공연으로 인정되는 국내 예술 실황 공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분 야 레크리에이션 · 문화 · 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서커스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6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 서커스단은 최대 90일 동안 원래의 출연진으로 페루에 체류할 수 있다. 이 기간은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연장되는 경우, 외국 서커스단은 최소한 예술가 중 30퍼센트, 기술자 중 15퍼센트의 페루 국민을 포함할 것이다. 동일한 비율이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 적용된다.

13. 분야 상업 광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 및 제 27.2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서 제작된 상업 광고는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내국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임금 및 급여 지불총액의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상업 광고에 관여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 적용된다.

14.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투우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8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최소한 한 명의 페루 국적을 가진 투우사가 투우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 최소한 한 명의 페루 국적을 가진 견습 투우사가 어린 황소가 포함된 경기에 참여해야 한다.

15. 분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이행요건(제9.7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813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3. 12. 18.) *예술가 및 공연자 법(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 및 제 45 조

유보내용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무역

지상파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회사는 그들의 일일 프로그램편성에서 최소한 10 퍼센트를 다음의 비율로 예술가를 고용하여 전통문화와 국내음악 그리고 페루의 역사, 문학, 문화 또는 최근 이슈에 대해 페루에서 제작한 연속물이나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

가. 최소한 80 퍼센트의 내국인 예술가

나. 내국인 예술가는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급여의 지불총액에서 60 퍼센트 이상을 수령한다, 그리고

다. 전 항들에서 설정된 동일한 비율이 예술 활동에 관련된 기술인력의 작업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16. 분야 보세 창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8-95-EF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5. 2. 5.)
보세 창고 규정 승인(*Aprueban el Reglamento de Almacenes Aduaneros*), 제 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 주소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보세 창고를 운영하기 위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7.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27-2004-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4. 7. 15.) 통신법의 일반 규칙에 관한 통합 문서(*Texto Único Ordenado del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de Telecomunicaciones*) 제 269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자국 영역 밖에 위치한 기본통신망으로부터, 전화를 걸라고 요청하는 회신전화를 받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발신되는 전화시도를 실현하기 위한 전화서비스의 제공으로 이해되는 콜백은 금지된다.

18. 분야 운송

하위분야 항공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7261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5. 10.) *민간 항공법(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75 조 및 제 79 조

최고 법령 제050-2001-MTC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1. 12. 26.) *민간 항공법의 규정(Reglamento de la 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147조, 제 159조, 제 160조 및 보완 규정 VI

유보내용 투자

국적 상업 항공은 페루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유보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페루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가. 페루 법에 따라 설립되고, 사업 목적으로 상업 항공을 명시하며, 페루에 소재하고, 페루 내에서 그 주된 활동과 관리를 한다.

나. 이사, 관리자, 그리고 기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인의 최소한 과반수는 페루 국민이거나 페루에 영구적인 주소지를 갖거나 통상 페루에 거주한다, 그리고

다. 주식 총액의 최소 51 퍼센트는 페루 국민에 의해 소유되며 페루에 영구히 거주하는 페루 주주나 동업자의 실질적이고

유효한 통제에 따라야 한다(이 제한은 법 제 24882 호에 따라 설립되고,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소유권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상업 항공운송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인가일로부터 6 개월 후, 외국인은 지분의 70 퍼센트까지 소유할 수 있다.

페루 서비스 공급자(“explotadores nacionales”)에 의해 수행되는 운영 중에, 기내에서 비행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은 페루 국민이어야 한다. 민간항공총국은, 기술적 이유로써, 인가가 부여된 날부터 6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러한 기능을 외국 인력에게 수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민간항공총국은, 페루 항공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명을 제공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 인력이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비행기를 조종하고 페루 항공 인력을 훈련시키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페루 인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19.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제 10.2 조)
현지주재(제 10.5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6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8583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5. 7. 22.) 국적 상선의 재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법(*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4.1 조, 제 6.1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 및 제 13.6 조

법 제 29475 호, 제 28583 호를 수정한 법(관보 “엘 페루아노” 2009. 12. 17.) 국적 상선의 재활성화 및 증진에 관한 법(*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13.6 조 및 제 10 차 잠정 최종 규정

최고 법령 제028 DE/MGP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5. 25.) 법 제 26620호의 규정(*Reglamento de la Ley Nº 26620*) 제 I - 010106 (a)항

유보내용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 기업”은 페루 국적의 자연인 또는 주소재지와 실질적이고 유효한 본사가 페루 내에 있고 페루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이해된다. 그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은 국내수송 또는 연안운송²⁾ 그리고/또는 국제수송에서 수상 운송서비스 사업을 제공하며, 수상운송총국으로부터 관련 운용허가를 획득하고, 적어도 한 척 이상의 페루 국적 상선을 소유하거나 또는 의무적 매입옵션이 부가된 금융리스나 나용선 계약을 통해 그러한 선박을 임차한 인으로 이해된다.

2. 미납입자본과 납입자본 총액의 최소 51 퍼센트는 페루 시민에 의해 소유되어야 한다.

3. 이사회 의장, 이사의 과반수, 총 관리자는 페루 국민이면서 페루 거주자여야 한다.

4. 페루 국적 선박의 선장과 승무원은 전부

“해안경비대총국(Dirección General de Capitanías y Guardacostas)”이 인가한 페루 국민이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그리고 해당 종류의 선박 경험을 갖춘 자격 있는 페루 인력이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입증한 후에 제한된 기간 동안 외국인은 전체 승무원의 최대 15 퍼센트까지 고용될 수 있다. 후자의 예외는 그 선박의 선장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5. 페루 국민만이 면허를 받은 항내 도선사가 될 수 있다.

6. 연안운송은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에 의해 소유되거나 의무적 구매선택권이 부과된 금융임대계약 또는 나용선계약에 따라 임대된 페루 국적의 상업 선박에 전적으로 유보된다. 단, 다음은 제외된다.

가. 국가수역 내 탄화수소 수송의 25 퍼센트까지는 페루 해군의 선박을 위해 유보된다. 그리고

나.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이 앞서 언급된 방식에

2)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수상운송은 호수와 강에서의 운송을 포함한다.

따라 선박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
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은 외국국적의 선박을, 페
루의 항구 간 또는 연안운송의 수상운송에만, 6개월 이하
의 기간 동안에 한정하여 독점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0.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9.3 조 및 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56-2000-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12. 31.) 만과 항구 지역에서 행해지는 수상운송 서비스와 그 관련된 서비스는 국적기의 인공물과 선박을 보유한, 인가된 자연인과 법인에 의해서 공급되어야 한다는 규정 (*Disponen que servicios de transporte marítimo y conexos realizados en bahías y áreas portuarias deberán ser prestados por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autorizadas, con embarcaciones y artefactos de bandera nacional*) 제 1 조

각료 결의(Resolución Ministerial) 제 259-2003-MTC/02호 (관보 "엘 페루아노" 2003. 4. 4.) 만교통과 항구지역에서 제공되는 수상운송 서비스와 그 관련 서비스 규정 승인(*Aprueban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Transporte Acuático y Conexos Prestados en Tráfico de Bahía y Áreas Portuarias*) 제5조 및 제7조

유보내용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무역

만과 항구 지역에서 제공되는 다음의 수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는 페루 국적의 선박과 장비로 적절하게 인가되고 페루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페루에 설립되고 소재한 법인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

- 가. 연료 보급 서비스
- 나. 계류 및 출항 서비스
- 다. 잠수서비스
- 라. 식료품 적재 서비스
- 마. 준설서비스
- 바. 항만 도선 서비스
- 사. 폐기물 수거 서비스
- 아. 예인선 서비스, 그리고
- 자. 여객 운송

21.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결의안 제 011-78-TC-DS 호(1978. 2. 6.) 관광 운송 기업
관련 규정(*Reglamento de Empresas de Transporte Turístico*)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페루에 설립되고 주소를 둔 법인
만이 관광용 수상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22. 분야 운송

하위분야 수상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7866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2. 11. 16.) *항만 노동법(Ley del Trabajo Portuario)* 제 3 조 및 제 7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 시민만이 항만노동자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다.

항만노동자는,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각 항구에 마련된 작업 가운데, 하역인부 · "검수인(tarjador)" · "윈치운전수(winchero)" · "기중기운전수(gruero)" · "기중기운전수 조수(portaloner)" · "하역잡부(levantador de costado de nave)"와 같은 항만 작업 임무의 수행과 관련된 특정한 서비스를 항만고용주의 수하에서 수행하는 자연인이다.

23. 분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 여객 운송

관련의무 현지주재(제 10.5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법령 제 006-2010-MTC 호(2010.1.22.)에 의해 수정된
최고 법령 제 017-2009-MTC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9. 4.
22.) 국가 운송관리 규정(*Reglamento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nsportes*)제 33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운송 서비스 공급은 고객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야만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물적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적절한 경우, 사무실, 사람과 상품을 위한
버스 터미널, 노선 상의 역, 버스 정거장, 상품의 하역 및 보관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그 밖의 모든 기반시설, 정비소,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24. 분 야 운송

하위분야 육상 운송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 치 칠레공화국 정부,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파라과이공화국 정부, 페루공화국 정부 및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에 몬테비데오에서 1990년 1월 1일 서명된 “국제육상운송 협정”(Acuerdo sobre Transporte Internacional Terrestre - ATIT)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국제육상운송 협정(ATIT)과 합치되고 페루에 의해 허용된, 육로로 국제 수송을 수행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은 페루 영역 내에서 현지 운송(연안운송)을 제공할 수 없다.

25. 분야 연구 및 개발 서비스

하위분야 고고학 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최고 결의안 제 004-2000-ED 호(관보 "엘 페루아노" 2000. 1. 25.) *고고학연구 규정(Reglamento de Investigaciones Arqueológicas)* 제 30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외국인 고고학자가 이끄는 고고학 연구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의 과학적인 공동지휘 또는 보조지휘를 위해 고고학자 국가등록소에 등록된 페루 고고학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동지휘자 및 보조지휘자는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수행(현장 및 사무실 작업을 말한다)에 참여한다.

26. 분야 에너지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대우(제 10.2 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법 제 26221 호(관보 "엘 페루아노" 1993. 8. 19.)
탄화수소에 관한 일반법(*Ley General de Hidrocarburos*)
제 15 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페루에서 탐사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의 자연인은 공공 등록소에 등록하고 페루공화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페루 국민에게 위임장을 제공해야 한다.

외국 기업은 지사를 설립하거나 기업 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페루공화국의 수도에 소재하며, 페루 국민을 간부로 임명해야 한다.